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합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제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장소(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 - 68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V) 건축물() 도시철도()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해당사항없음
중계장치 설치 위치	1.지하2층: 현릉 2.지하3층: 현릉
접지단자 위치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합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해당사항없음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합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합의사항	상세합의결과 참조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합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음.

2021년 02월 10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주)원양건축사무소	이승연
대리인	(주)원양건축사무소	이수연 (인동의함)

기간통신사업자 합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상세 협의 결과

1.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해당사항없음

2 중계장치 설치 위치

1.지하2층: 헬룸
2.지하3층: 헬룸

3. 기타 협의사항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중계설비 설치시기 : 건축주 공사요청일 ~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
※ 공사요청일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
 - 중계설비 설치시기 : 건축주 공사요청일 ~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
※ 공사요청일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상호협의결과서 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위치와 도면 상의 위치가 일치하는 지 확인 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동통신설비 설계도서가 시공사(건설사)에게 반드시 전달 되어, 건축물에 선로설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